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1. 2005. 11. 28. 제2005-490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소
속재단에 매각하였으나 계속 종교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단
서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
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장로회○○유
지재단에 이전한 이후에도 당초 취득목적
대로 계속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
는 것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종교용으로 사
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
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상가(○○호 86.73㎡,
302호 55㎡, 303호 55㎡, 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
으로 2002. 9. 30에 취득하자 종교용으로 사용
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
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8. 18 (재)○○장로회○○유지재단에
매각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5,356,800원, 농어촌특별세 491,040원, 등록
세 8,035,200원, 지방교육세 1,473,120원, 합
계 15,356,160원(가산세 포함)을 2005. 5. 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9. 30 취득하였다가 ○○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장로회○○유지재단에 매매형식으로 2003. 8. 30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변함없이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소유자도 ○○교회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소속재단에 매각하였으나 계속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산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 9. 30, ○○도 ○○시 ○○읍 ○○리 ○○번지 ○○상가 ○○호, ○○호, ○○호를 청구외 정○○으로부터 223,200,000원에 취득하고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아 2002.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3. 8. 18 이 사건 부동산을 (재)○○장로회○○유지재단에 223,200,000원에 매각하자,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2005. 5. 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9. 30 취득하였다가 ○○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장로회○○유지재단에 매매형식으로 2003. 8. 30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변함없이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소유자도 ○○교회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정○○으로부터 취득가액을 223,200,000원으로 하여 2002. 9. 30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예배당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재)○○장로회○○유지재단에게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인 223,200,000원으로 형식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 8. 18 매도하였음이 (재)○○장로회○○유지재단 정관 제3조 및 ○○장로회 헌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과 (재)○○장로회○○유지재단의 2003년도 현금출납부 등으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장로회○○유지재단에 이전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계속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5. 11. 28. 제2005-497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

법정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상속인이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월 이내

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4. 29. 취득한 ○도 ○○시 ○○동 ○○블록 1롯데 ○○아파트 ○○동 ○○호(건축물 전용면적: 84.914㎡, 토지: 62.2614㎡는 미등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25를 경감받았으나 2003. 9. 9.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2001. 1. 29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건축물: 38.40㎡, 토지: 198.4㎡)를 청구인과 청구의자인 박○○ 등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897,810원, 등록세 784,600원, 지방교육세 143,830원, 합계 1,826,240원(가산세 포함)을 2005. 7. 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의 박○○

○이 2001. 1. 23 사망하기 전인 1996. 7. 8
○○도 ○○시 ○○구 ○○동 ○○빌라 ○
○동 ○○호(건축물 : 38.40㎡, 토지 198.4
㎡)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2005. 9. 21)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박○○외 5명) 어느 누구에게
도 상속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이
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
트를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정상속지분
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
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
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경
기도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
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
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서는 “1가구 1주택”을 취득일 현재 주민등
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단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
인은 2003. 4. 29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3. 5. 17 취득신고 시 1가구 1주택으
로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받았으나, 2003. 9. 9 건설교통부의 주택전
산 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인
2001. 1. 23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박
○○ 등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이 있는 주택
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2005. 7. 12 부과 고
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박○○ 소유주택이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2005. 9. 21)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박○○외 5명) 어느 누구에게도 상속 결
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이를 상속받
은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으로 판단하여 기 감면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
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단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
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2005. 12. 26. 제2005-535호 (등록세 등 부과처분 기각)

법인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종과세한 처분이 상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

산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판결 98두11786, 1999.5.14), 대도시내로의 법인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종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서울출장소(◆◆)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003년 및 2004년 회계년도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의 안분내역표에서 본점(◇◇) 및 서울출장소(◆◆)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00.5월부터 2005.2월까지 서울출장소는 ◆◆구청에 주민세 특별정수를 신고납부한 점, 2003.4.30. 청구인의 지방세 서면신고서에서도 서울시내 사업장은 서울출장소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임대용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05.4.19.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내 8층은 청구의 ○○크레베스(주) 및 (주)●●교육이 임차하여 소재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상호 및 간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자료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알 수 있는 점, 2003.6.28. 청구인의 서울지점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내에는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청구의 ○○크레베스(주)가 소재하고 있고, 청구의 ○○크레베스(주)의 경리담당 차장인 청구의 오◆◆이 청구인의 내부문서

에 담당차장 또는 과장으로 결재처리하고 청구인의 총무팀장이라는 명함으로 대외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된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1. 4 서울특별시 ○○구 ○○동 7×1-×2번지 소재 부동산(토지 1,159,60㎡, 건물 7,424,2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5. 4. 19 처분청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 6. 2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29,688,000원, 지방교육세 60,442,800원, 합계 390,130,800원(가산세 포함)을 2005. 7. 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 5.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을 ○○북도 ○○시 ○○동 1××5번지에 두고 있었으나 1998. 10. 13 본점(◇◇)의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본점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구 ○○2가 1×5번지에 소재한 서울출장소(◆◆)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여 1998. 10. 13부터 2000. 2. 29까지 서울출장소를 실제 본점사무소로 사용하였으며, ○○북도 ○○시 ○○동 1××5번지 소재 건물은 임대용 부동산으로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인적·물적설비 없이 형식상으로만 본점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인 2000. 2. 29 서울출장소(◆◆)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실상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동)으로 이전하여 회사의 중역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근무하면서 본점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실상 본점 전입일인 2000. 2. 29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본점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0. 2. 29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7. 11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한 것이고, 지점에 대해서는 1994. 6. 14 서울특별시 ○○구 ○○2가 1×5번지에 서울출장소(지점)를 설치하였고, 1997. 12. 23 서울특별시 ●●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였으며, 2003. 6. 28 서울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서울지점의 이전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한 1997. 12. 23 이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발생하는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일인 1999. 11. 4이며, 등록세 중과세 납부기한은 1999. 11. 4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등록세 중과세의 고지일인 2005. 7. 11 현재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지점이 설치되어 등록세를 부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부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점 등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부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 5. 24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북도 ○○시 ○○동 1×7×-2번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2001. 4. 13 본점소재지를 ○○북도 ○○시 ○○동 1××5번지로 이전등기한 후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 11. 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고, 이후 2003. 6. 2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의 서울지점 설치등기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전인 1994. 6. 14 서울출장소(◆◆)에 대한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서울출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0. 5월부터 2005. 2월까지 ◆◆구청에 주민세특별정수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2002. 4. 30 청구인이 ◆◆구청에 제출한 2001회계년도 주민세(법인세 할) 자진납부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이 ◇◇시 및 서울출장소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2003년도 및 2004년도분 주민세(법인세 할)신고서의 안분내역표에서도 사업장 소재지를 ◇◇시 및 ◆◆출장소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03. 4. 30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2회계년도 지방세 서면신고서에 의하면 서울시내 사업장은 16명이 근무하는 서울출장소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전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5.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을 ○○북도 ○○시 ○○동 1×5번지에 두고 있었으나 1998. 10. 13 본점(◇◇)의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본점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구 ○○2가 1×5번지에 소재한 서울출장소(◆◆)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여 1998. 10. 13부터 2000. 2. 29까지 서울출장소를 실제 본점사무소로 사용하였으며, ○○북도 ○○시 ○○동 1×5번지 소재 건물은 임대용 부동산으로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인적·물적설비 없이 형식상으로만 본점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인 2000. 2. 29 서울출장소(◆◆)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실상 본점

을 이 사건 부동산(○○동)으로 이전하여 회사의 중역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근무하면서 본점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실상 본점 전입일인 2000. 2. 29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본점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0. 2. 29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7. 11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한 것이고, 지점에 대해서는 1994. 6. 14 서울특별시 ○○구 ○○2가 1×5번지에 서울출장소(지점)를 설치하였고, 1997. 12. 23 서울특별시 ○○구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였으며, 2003. 6. 28 서울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서울지점의 이전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한 1997. 12. 23 이후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발생하는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일인 1999. 11. 4이며, 등록세 중과세 납부기한은 1999. 11. 4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등록세 중과세의 고지일인 2005. 7. 11 현재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98두11786 판결, 1999. 5. 14 선고), 대도시내로의 법인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전입등기는 이루어지

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서울출장소(◆◆)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울출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03년도 및 2004년 회계년도 주민세(법인세 할) 신고서의 안분내역표에 의하면 본점(◇◇) 및 서울출장소(◆◆)에서 청구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00. 5월부터 2005. 2월까지 서울출장소는 ◆◆구청에 주민세 특별징수를 신고 납부한 점, 2003. 4. 30 청구인의 지방세 서면신고서에서도 서울시내 사업장은 서울출장소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임대용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05. 4. 19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내 8층은 청구의 ○○크레베스(주) 및 (주)○○교육이 임차하여 소재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상호 및 간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자료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0. 2. 29부터 법인동기부등본 및 사실상 본점인 본점(◇◇) 및 서울출장소(◆◆)를 폐쇄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 6. 28 청구인의 서울지점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내에는 청구인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청구

의 ○○크레베스(주)가 소재하고 있고, 청구의 ○○크레베스(주)의 경리담당 차장인 청구의 오○○이 청구인의 내부분서에 담당차장 또는 과장으로 결재처리하고 청구인의 총무팀장이라는 명함으로 대외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서울지점 설치일인 2003. 6. 28이며,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인 2005. 7. 11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등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2005. 12. 26. 제2005-540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

회원제골프장 내의 스포팅클러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서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회원제골프장 내에 설치한 스프링쿨러는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수적인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급·배수시설에 해당(대법원 판결 89누5638, 1990. 7. 13)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이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 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골프장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 골프장에서 설치한 스프링쿨러가 개별적으로는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2. 2. 29 ○○도 ○○시 ○○면 ○○리 4××-2번지 일원의 토지 1,613,247㎡에 회원제골프장(36홀)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중인 2003. 12. 31 잔디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스프링쿨러(이하 “이 사건 스프링쿨러”라 한다)를 설치한 후 2004. 1. 20. 취득가액(398,141,02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8,759,1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5. 5. 19.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회원제골프장 내 설치한 스프링쿨러는 취득

세 등이 중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스프링쿨러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221,530원, 농어촌특별세 3,503,630원, 합계 41,725,160원(가산세 포함)을 2005. 9. 12 부고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2. 2. 29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2003. 12. 31 이 사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였으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회원제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정지, 사무실 등 관리 시설 등을 구분하여 등록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스프링쿨러는 등록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골프장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골프장용 토지의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원제골프장 내 설치한 스프링쿨러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원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는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골프코스(티그라운드·웨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그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 그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그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

고 있는 조정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 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그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 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그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2. 2. 29 회원제골프장(36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인 2003. 12. 31 잔디생육에 필요한 이 사건 스프링쿨러를 설치한 후 2004. 1. 20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5. 5. 19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회원제골프장 내 설치한 스프링쿨러는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5. 9. 12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원제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스프링쿨러는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스프링쿨러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서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상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회원제골프장 내에 설치한 스프링쿨러는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수적인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급·배수시설에 해당(대법원 선고 89누 5638 1990. 7. 13)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이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 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골프장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록 골프장에서 설치한 스프링쿨러가 개별적으로는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2005. 12. 26. 제2005-545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

법인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과점주주 주식비율 전체를 증여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려면 이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간의 주식이동으로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야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 2000-167호, 2000.3.29), 청구인이 비록 청구의 이○○의 배우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2004.9.18. 이전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9.18. 이 사건 법인의 구 주주인 청구의 이○○의 소유주식 전부(28,000주)를 최초로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70.0%)가 된 이상, 이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1××8-×5번지 소재 (주)○○테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8,000주(70.0%)를 2004.9.18. 남편인 청구의 이○○으로부터 증여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 9. 18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중 소유주식비율(70.0%)에 해당하는 금액(616,145,705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81,650원, 농어촌특별세 1,320,300원, 합계 17,201,950원(가산세 포함)을 2005. 8.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 1인과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을 1인으로 보고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고, 특수관계자 전체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의 이○○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부부간의 주식거래로서 과점주주간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된다 하겠고, 주식이동 후에도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과점주주 소유주식 전체를 증여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4항 전단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수의 총수로써 나는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중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 9. 18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의 이○○(청구인의 남편)의 소유주식

28,000주(70.0%) 전부를 중여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의 이○○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부부간의 주식거래로서 과점주주간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제11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액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간의 내부적 주식이동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려면 이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간의 주식이동으로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0-167호, 2000. 3. 29)으로, 청구인이 비록 청구의 이○○의 배우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2004. 9. 18. 이전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9. 18. 이 사건 법인의 구 주주인 청구의 이○○의 소유주식 전부(28,000주)를 최초로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70.0%)가 된 이상, 이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

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2005. 12. 26. 제2005-547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산화물로 국내로 반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에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을 정의함에 있어 매매, 교환, 상속 등 소유권의 변동을 동반하는 경우와 개수와 같이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간척 등 소유권이 창설된 경우를 취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취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외관에 불구하고 과세물건의 유통과정에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새로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에서 2004.6.10. ○○국 ○○현 ○○시 ○○丁目 8-×번지에 주소를 두고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사실이 ○○운수지국장이 발행한 자동차검사증(번호 00×7×호)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5.5.20. 이산화물로 일반수입한 사실이 수입신고서상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국에서 차량을 취득·등록하여 사용하다가 국내이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산화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5. 20. ○○국에서 낫산 시마 ○○자동차(차대번호 : KL××A3AAGGIS2000××,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를 이산화물로 수입한 후 2005. 6. 20. 시가표준액 31,14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2,940원을 신고 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국에서 취득하여 11개월 이상 사용하다 이산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동일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2중으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산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 등은 사실상의 취득 가격 또는 원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1989년 ○○국으로 출국하여 생활하던 중 2004. 6. 10 (○○국 평성 16년) 이 사건 자동차를 ○○국에서 취득·등록하여 운행하다가 2005. 5. 20 이산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후 2005. 6. 20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물건을 단지 이사하였다는 사유만

으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동일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2중으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의 환부를 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을 정의함에 있어 매매, 교환, 상속 등 소유권의 변동은 동반하는 경우와 개수와 같이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간척 등 소유권이 창설된 경우를 취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취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외관에 불구하고 과세물건의 유통과정에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새로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본국에서 2004. 6. 10(○○국 평성 16년) ○○국 ○○현 ○○시 ○○丁目 8-×번지에 주소를 두고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사실이 ○○운수지국장이 발행한 자동차검사증(번호 00×7×호)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5. 5. 20 이사화물로 일반수입한 사실이 수입신고서상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국에서 차량을 취득·등록하여 사용하다가 국내 이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 재화의 이전이라는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후 운행하던 중에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2005. 12. 26. 제2005-500호 (취득세 등 부과처분 결정)

과점주주 설립 이후 주식소유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종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종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하는 때’나 ‘사실상 사용한 때’에 취득세 종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승계 취득자에게는 취득세 종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등의 경우는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2003. 9. 30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의 종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지만, 2003. 12. 30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부칙제3조(이행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 7. 1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2004. 8. 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984,451,49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과세신고 납부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 등이 청구의 (주)○○이 시범라운딩을 개시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은 청구의 (주)○○이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청구인 등은 청구의 (주)○○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였거나 사실상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홍●●, 홍●●의 처 이◆◆, 홍●●의 자인 홍◎◎, 홍■)이 2002. 4. 25 서울특별시 ○○구 ○○동 7××번지 ○○오피스텔 1××1호 소재 청구의 ○○관광주식회사(2002. 7. 18 (주)○○으로 법인명을 변경함, 이하 (주)○○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청구의 최○○의 7인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점주주가 성립된 2002. 4. 25 현재 청구의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5,604,288,639원 중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용 토지 3,483,767,570원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잔여

2,120,521,068원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8,944,600원, 농어촌특별세 42,986,570원, 합계 511,931,170원(가산세 포함)을 2005. 6.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2002. 4. 25. 청구의 (주)○○의 주식 15,000주를 청구의 최○○의 7인으로부터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성립되었으나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2003. 9. 30 시범라운딩을 하였다는 사유로 과점주주 성립이후 주식비율이 변동된 사실도 없는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와 같이 골프장용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원시 취득자에게만 취득세의

중과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시 취득자와는 다른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가 성립된 이후 주식 소유 법인이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경우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중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

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 등은 2002. 4. 25 청구외 (주)○○의 주식 1,500주(1주당 : 액면가 10,000원) 중 홍●● 본인이 13,700주 홍●●의 처인 이◆◆이 900주, 홍●●의 자인 홍◎◎ 200주, 홍■ 2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는 2002. 4. 25 현재 청구외 (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가액 5,604,288,639원 중 골프장용 토지 3,483,767,571원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잔여 2,120,521,068원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와 같이 골프장용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시 취득자에게만 취득세의 중과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시 취득자와는 다른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부과처분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소유 법인이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개시함으로써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하는 때”나 “사실상 사용한 때”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승계 취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등의 경우는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2003. 9. 30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지

만, 2003. 12. 30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부칙 제3조(이영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 7. 1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2004. 8. 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984,451,49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과세신고 납부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 등이 청구의 (주)○○이 시범라운딩을 개시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인 청구인 등은 청구의 (주)○○이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청구인 등은 청구의 (주)○○이 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였거나 사실상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법리해석의 오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등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